



General Assembly

Distr.: General
28 July 2021

Original: English

제 76 차 회기
잠정적 의제 75 (c) *
인권 증진 및 보호: 인권 상황 및 특별 절차 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

사무총장 보고서

요약

본 보고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 [75/190](#) 에 의거하여 제출된다. 2020 년 8 월부터 2021 년 7 월까지 해당국 내 인권 상황을 개괄적으로 다루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인권과 관련하여 유엔과 협력한 내용도 요약하여 담았다.

* [A/76/150](#).



목차

	쪽
I. 서문	3
II. 정치적 상황	3
III. 인권 상황 개괄	4
A. 구금 시설 내 인권 침해	4
1.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 대우	5
2. 강제 노동	6
B.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8
C.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9
D. 가족 이산, 강제 또는 비자발적 실종, 국제 납치	11
IV.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 관련 정부와 유엔 간 협력	12
A. 유엔 정부간 기구 및 조약 기구와의 협력	12
B.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의 협력	13
C.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활동 중인 유엔 기구와의 협력	13
V. 결론	14
VI. 권고	14

I. 서문

1. 본 보고서는 유엔 총회 결의 75/190 에 의거하여 제출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을 다룬다. 앞서 2020년 8월 제 75차 총회 회기에 제출된 사무총장 보고서 이후의 인권 상황을 살핀다(A/75/271 참조). 본 보고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 상황, 인권 사안을 다루기 위한 유엔과의 협력 등을 포함하여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 상황을 개괄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으며, 본 보고서가 다루는 기간 동안 엄격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제한 조치로 인해 어려움이 한층 더 가중됐다. 본 보고서가 다루는 기간 동안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최근 대한민국에 입국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탈자(이하 “북 이탈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이어갔다.¹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021년 6월 9일과 7월 7일 제네바 유엔 사무국 및 국제기구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설 대표부에 구술서(note verbale)를 보내 해당국 정부로 하여금 보고서 초안에 정보를 제공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견해를 밝히도록 요청했다. 본 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이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3. 사무총장은 본 보고서에 개괄된 인권 문제 해결에 있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유엔과 건설적으로 협력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해당국 정부는 이러한 협력을 통해 국제인권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합의한 의무를 다하고, 국민 생활을 개선하고 존엄성을 지키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무총장은 또한 국제공동체에도 권고를 제시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체계적으로 협력하여 인권 상황 개선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평화와 인권 증진 노력에 있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탈자로 해외에 거주하는 이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권고를 포함한다.

II. 정치적 상황

4. 본 보고서가 다루는 기간 동안 남북 관계가 개선된 조짐은 없었다.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21년 3월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시험 발사했다.²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3월 26일 해당 시험 발사에 대하여 “지금은 남·북·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대화의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³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부장 김여정은 3월 30일 이에 대응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고 말했다.⁴
5. 앞서 김여정은 (2021년 3월 16일) 담화문을 통해 3월 8일로 예정됐던 미합중국과 대한민국의 합동 군사 훈련이 남북 관계를 저해한다며 비난했다.⁵

¹ 통일부는 2020년 대한민국에 북 이탈자 229명이 입국했다고 보고했다. 전년도에는 1047명이 입국했다. 대한민국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책” 참조.

² NK 뉴스, “북,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North Korea test-fires first ballistic missiles since Biden took office)”, 2021년 3월 24일.

³ 코리아헤럴드, “문 대통령, 대화 노력을 이어가는 중 미사일 발사한 북 비난(Moon slams North Korea's missile test amid efforts for dialogue)”, 2021년 3월 26일.

⁴ KCNA Watch,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부장 김여정 담화문 발표”, 2021년 3월 30일.

⁵ KCNA Watch, “3년 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 2021년 3월 16일.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도자 김정은은 조선로동당 제 8 차 대회 보고에서 앞선 국가경제발전 5 개년 전략의 경제 목표 달성이 미진했다고 인정했다. 특히 국민 생활 수준 향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해당 보고에서 국제 제재 조치와 자연 재해, “세계적인 보건 위기”, 국내 경제 사업 체계 및 질서를 바로잡지 못한 점을 국가경제발전 5 개년 전략 목표 달성 실패의 이유로 꼽았다. 자급자족을 목표로 국가 주도 계획에 따른 경제 발전이 우선 순위임을 재차 확인했다.⁶ 몇 달 후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3 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현 상황에서 “인민생활 안정향상” 이 필요하다고 재차 언급하며, 식량 상황이 “긴장” 상태라고 말했다.⁷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도자는 조선로동당 제 8 차 대회 보고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 세력이 우리를 겨냥하여 핵을 사용하려 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람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해당 보고에서 핵 역량 개발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는데, “핵무기의 소형 경량화, 전술무기화를 보다 발전”시키고 “초대형 핵탄두 생산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갈 것을 언급했다.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마지막으로 2017년 9월 핵 실험을 시행하고, 같은 해 11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결의 1874 (2009) 에 의거하여 발족된 유엔 전문가 패널은 최근 2021년 3월 보고서에서 해당국이 안보리 결의(S/2021/211, 문단 2-26)를 위반하여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개발했다고 언급했다.

8. 본 보고서가 다루는 기간 동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엄격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제한 조치로 인해 국내에 상주하는 외교 인력이 상당수 축소됐다.

III. 인권 상황 개괄

A. 구금 시설 내 인권 침해

9.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최근 대한민국에 도착한 북 이탈자와 면담을 통해 기록한 진술은 앞서 파악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구금 시설에서 자행된 인권 침해의 일관된 양상을 재차 확인해주었다.⁹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인권이사회 제 46 차 회기에서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했다.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자국의 정치 체제와 지도층에 위협이 된다고 보는 이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광범위한 공격을 자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권 침해를 당한 이들은 종교 활동을 하거나 체제전복적이라고 판단하는 외국 영화 또는 음악 등을 들여오거나 출국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개인을 포함한다. 해당 정책에 따라 마련된 제도로 인해, 기본적인 인권 행사를 보장하는 적법 절차 없이 구금되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권최고대표는 해당 보고에서 북 이탈자들은 구금 상태에서 고문에 이를 수 있는 고의적인 신체 및 정신적 고통에 노출되며, 이는 정치적 위협을 가한다고

⁶ 전미북한위원회, “제 8 차 당대회 최고지도자 김정은 보고 내용에 관하여”, 2021년 1월 9일.

⁷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3 차 전원회의 3 일 회의의 진행”, 2021년 6월 18일. KCNA Watch,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3 차 전원회의 개최”, 2021년 6월 16일.

⁸ KCNA Watch,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을 새 승리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 조선로동당 제 8 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2021년 1월 9일.

⁹ 구금 시설 내 여성이 경험하는 침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보고서 “여전히 고통스럽다...” 참조, 2020년 7월.

판단되는 이들을 억제하고 처벌하려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언급했다(A/HRC/46/52).

10. 인권최고대표는 보고서에서 일반 교정 제도를 담당하는 주요 국가 기관은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의사 결정이 고도로 중앙집권화되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내부적으로 명령 체계가 중첩된다고도 보았다. 결과적으로 지방, 지역, 국가 정부 조직에서 상급 관리들은 직급이 낮은 교도관 또는 유사 직원에 이르기까지 하급자들이 반인도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자행한다는 점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법했다고 판단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다. 만약 이처럼 구금자에 고통을 가하려는 의도를 띤 정책에 따라 인권 침해가 자행됐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관리는 지휘관 또는 상급자 책임 원칙에 의한 직접 참가자로서, 또는 공동범죄집단의 일부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상동 문단 45).

1.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 대우

11.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구금자를 대상으로 구타, 육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자세 강제, 굶주림을 통해 심각한 신체 및 정신적 통증 또는 괴로움을 체계적으로 가한 사례에 대한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지속적으로 확보했다. 인권최고대표는 이러한 정보가 앞선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재확인한다고 인권이사회에 보고했고, 교정 제도 상 고문에 해당하는 반인도범죄가 지속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언급했다(상동 문단 51).

12. 보고서가 다루는 기간 동안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구금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고 만연한 구타에 대한 진술을 목격자와 피해자로부터 확보하여 기록했다. 해당 진술은 2010 년부터 2019 년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는 사례를 언급한다. 심문 때 강제로 “자백”을 유도하려고, (오랜 시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지 못하거나 상호 비판 총화 때 상대 구금자를 가혹하게 비난하지 못한 것 등을) 징계하려는 수단으로, 또는 뇌물을 제공하지 못하여 구타하는 사례가 보고됐다.¹⁰

13. 이들이 묘사한 구타의 정도는 고문에 이를 수 있으며, 국제법 상 어떤 경우에도 금지된다. 한 여성은 (미결구금 시설에 해당하는) 집결소에 구금됐을 당시 국가보위성 소속 담당자에게 장작으로 얼굴을 구타당해 “얼굴 피부가 찢어지고 턱이 돌아가고 치아 네 개가 빠졌다”고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말했다. 또 다른 여성은 사회안전성 소속 담당자에게 구타 당했던 경험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무릎을 꿇게 한 후 허벅지를 때렸다. 일 년 가까이 제대로 걷지 못했다.” 집결소에 구금됐던 또 다른 여성은 막대기, 의자, 가죽 허리띠로 사회안전성 소속 담당자들에게 구타당했다고 언급하며, “우리한테 [감방] 창살 위에 머리를 대라고 하고는 계호원이 방망이로 때렸다...우리는 계호원에게 동네북이나 다름없었다”고도 말했다.¹¹

14. 과거 (감옥에 해당하는) 교화소에 수감됐던 남성은 “계호원에게 맞아 앞니가 나갔다”고 서술했다. 또 다른 남성은 집결소에 구금됐을 때 네 시간 연속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가 “조금 움직였다”는 이유로 사회안전성 소속 교도관에게 구타를 당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벌을 받을 때 개머리판으로 맞았다. 처음 맞고 나서 바로 일어나지 못해서 또 맞았다.”¹²

15. 본 보고서가 다루는 기간 동안 기록한 구금 시설 내 다른 처우도 고문 또는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 대우에 해당할 수 있다. 진술에 따르면

¹⁰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수행한 면담 자료.

¹¹ 상동.

¹² 상동.

구금자는 아주 사소한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로 가혹한 신체적 처벌을 받는다. (미결구금 시설에 속하는) 사회안전성 구류장에 구금됐던 한 여성은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물로 채워진 70 리터짜리 욕조가 있었다. 우리에게 그 물을 바닥에 끼얹게 하더니 앉으라고 했다. 바지가 다 젖어서 몸이 뽕뽕 얼었다.” 한 감방에 있던 열두 명이 단체로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는데, 그 중 한 명이 밤에 코를 골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단체로 “손을 앞으로 뺀 후 앉았다 일어서기를 1000 번 했다. 나는 어려서 괜찮았지만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국가보위성 산하 집결소에 구금됐던 한 남성은 단체로 처벌을 받은 사례를 전했다. 양반다리를 하고 강제로 앉아 있는 동안 한 명이 “소리를 냈기” 때문이었는데 “무릎만 바닥에 대고 앉은 상태로 손은 앞으로 뺀고 움직이지 말라고 했다.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있었다. 움직이면 손을 밖으로 나오게 내밀라고 하고는 막대기로 때렸다.”¹³

16. 본 보고서가 다루는 기간 동안 기록한 진술은 2010 년부터 2019 년까지 발생했던 사례들로, 이전에도 파악됐듯이 구금자에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열악한 식사가 제공되는 상황이 여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¹⁴ 이러한 상황은 구금자들이 강도 높은 노동에 동원되는 노동 수용소에 해당되는 로동단련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강냉이밥만 줬다. 하루 세 번 100 그램 정도 줬다.” 가족이 면회를 와야지만 적절한 수준의 식사를 할 수 있었다. 가족 면회가 없는 이들은 더욱 심각한 고통을 겪는다. 교도관들마저도 구금자 가족이 면회 때 가져온 식량에 의존한다고 언급했다. 북 이탈자 두 명이 각자 교화소에서 겪은 일을 들려줬는데, 영양실조로 사망까지 이를만한 식량 상황이라고 묘사했다.¹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 조치를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한 2020 년 1 월 말 이후에 구금을 경험했던 이들을 면담하지는 못했지만, 일반 국민이 처한 식량 상황이 심각해졌기에 구금자의 식량 상황도 악화됐을 위험이 있다.

2. 강제 노동

1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는 강제 노동에 기대어 운영되며, 징집병과 아동을 포함한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강제 노동 동원이 여전히 만연하다. 상당 수에 이르는 구금자를 동원한 강제 노동도 한 축을 이루는데, 구금자의 일과는 노동을 위주로 돌아간다.¹⁶ 건설, 농업, 벌목, 석탄 및 기타 광석 채굴 등을 위주로 여러 부문에서 남성과 여성 구금자는 강도 높은 육체 노동에 동원된다.¹⁷ 또한 주로 여성 구금자를 시켜 장시간 뜨개질, 금속 조립, 가발·인조 속눈썹·목걸이 등 소비재를 생산한다. (“노동”을 통해 “경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교육”한다는 의도로 운영되는) 로동단련대, (“노동”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교화”한다는 의도로 운영되는) 교화소, 미결구금 시설에 해당하는 집결소, 정치범 수용소에 해당하는 관리소 내 구금된 이들의 생활은 강제 노동으로 점철되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과 행정법이 노동을 통한 “교육”과 “교화”를 전제함으로써 사실상 이런 형태의 착취에 법적 구실을 마련해준다.

¹³ 상동.

¹⁴ 인권최고대표는 해당 문제가 여전히 지속된다고도 강조했다(A/HRC/46/52, 문단 55).

¹⁵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수행한 면담 자료.

¹⁶ 본 보고서가 다루는 기간 동안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면담한 이탈자에 따르면, 인민반에서 강제로 동원하여 건설 현장이나 농장에 보내 일을 시킬 뿐만 아니라, 국영 공장에서 무급으로 일을 하거나 군인이나 학생을 건설 및 농업 현장에 동원하는 등 여러 형태의 강제 노동도 존재한다.

¹⁷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의 피로 물든 석탄 수출, 정권을 유지하는 다단계 수익구조”, 2021 년 4 월.

또한 별도의 재판이나 사법적 감시 없이 공무원이 행정법을 근거로 “로동단련”형을 내리기도 한다.¹⁸

18. 강제 노동에 관한 협약(제 29 호)과 강제 노동 폐지 협약(1957)(제 105 호)에 명시한 기준을 적용하여, 국제노동기구는 다음과 같은 비자발적인 교도 작업을 강제 노동에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한다. 법정에서 적절한 절차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수감자가 비자발적으로 노동하는 경우, 수감자의 비자발적인 노동을 통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 정치적 강요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거나 혹은 정치적 의견을 갖거나 표현한 것에 대한 처벌로 비자발적인 노동을 시키는 경우,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동원하는 경우, 징계를 목적으로 노동을 시키는 경우, 파업에 참여한 데 대한 처벌로 노동을 시키는 경우, 인종, 사회적, 국적 또는 종교에 대한 차별로 노동을 시키는 경우 등이 있다.¹⁹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벨슨 만델라 규칙)에 따르면, 교도 작업은 고통, 괴로움 또는 슬픔을 유발하는 “성질상 고통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19. 본 보고서가 다루는 기간 동안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교정 제도 하에서 복이탈자가 교정 제도 하에서 성별과 무관하게 강제 노동을 경험한 사례를 계속해서 접했다. 로동단련대에서는 농장반, 염전, 건설 현장, 터널 굴착, 발전소, 벌목, 나무 베기 등에 동원됐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작업이 “특히 육체적으로 힘들”었다고 묘사했고, 장시간 적절한 보편 및 안전 조치 없이, 부상이나 작업으로 발생한 질병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이뤄졌다. 로동단련대에 수감됐던 한 여성은 군(郡) 단위 병원과 인민학교 건설에 동원됐는데, “시멘트를 실었다 내렸다”하는 “힘든” 일을 했다고 묘사했다. 또한 “숨을 쉬다보면 시멘트를 흡입할 수 밖에 없었다. 마스크나 장갑은 없었다”고도 언급했는데, “가래를 뱉으면 시멘트 알갱이가 섞여 있었다”고 진술했다. “손을 아무리 씻어내도 시멘트가 잘 씻겨 나가질 않아서 손이 갈라지고 건조해졌다”고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말했다.²⁰

20. 본 보고서가 다루는 기간 동안 교화소, 집결소에 과거 구금됐었던 여성과 남성은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인조 속눈썹과 목걸이를 만들거나 뜨개질로 옷을 만들거나 농사, 벌목 및 건설에 동원됐다고 진술했다. 주어진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구타를 당하거나 식사를 적은 양 받거나 독방에 갇힌다고 언급했는데, 할당량을 채우려고 밤새 일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고 한다. 농사일을 할 때는 장비를 쓰지 않는데, 과거 구금됐던 한 사람은 동료 수감자와 “대개 소가 끄는 수레를 직접 끌었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여성은 집결소에 있는 동안 동료 수감자와 자신이 “마당에 앉아 일을 하는 바람에 발가락에 모두 동상이 걸렸다. 나무를 베러 갔다가도 동상에 걸린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일하는 동안 “계호원 두세명이 자동 소총으로 무장하고 감시했다”고 한다.²¹

21. 인권최고대표는 일반 수감시설에서 특별히 가혹한 조건 하에 강제 노동이 발생했다는 신빙성 있는 진술을 확보했고, 이는 반인도범죄 중 노예화에 해당할 수 있고,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관련하여 상당히 우려한다고 인권이사회 제출 보고서에 언급했다(A/HRC/46/52, 문단 61).

¹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행정처벌은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검찰기관, 인민보안기관 소속 관료가 부과할 수 있다. 제 90, 230, 232, 235 조 참조.

¹⁹ 국제노동기구, *강제 노동 척결: 고용주와 기업을 위한 편람* (2015), 10 쪽 및 17 쪽.

²⁰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수행한 면담 자료.

²¹ 상동.

B.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2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규제 조치로 인해 정보 접근성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결사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더욱 제한됐다.

23.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진술한 북 이탈자는 독립적인 언론이나 기타 출처의 정보 접근은 허용되지 않고, 국영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사상 선전이 이뤄진다고 진술했다. 해외 매체, 특히 대한민국 영화, 드라마, 음악 등을 소지한 채 적발될 경우 엄격한 처벌을 받으며 근래 “단속이 강화”됐다고 언급했다. 한 여성 이탈자는 “뇌물을 줄 돈이 없으면 2년 내지 3년 형을 받는다”고 말했다.²² 109 상무²³ 뿐만 아니라 사회안전성과 국가보위성이 가택을 점검하여 해외 매체물이 있는지 살핀다는 진술도 여전하다.²⁴ 휴대전화 사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국외 전화도 감시 대상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2년에 이르는 교화형을 받는 등 무거운 형벌에 처해진다.²⁵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6월 조선로동당 전원회의에서 개인주의와 “이색적인 생활 풍조”를 포함하는 반사회주의 위협에 “더욱 공세적으로 실속있게” 대응할 것을 관료들에게 주문했다. 이는 규제가 강화됐다는 일부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²⁶

24. 법치주의를 준수하는 독립적인 사법부의 부재는 인권을 보호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해서 미친다. 본 보고서가 다루는 기간 동안 기록한 진술에 따르면 사법 제도 내 부정부패로 인해 판사, 검사 및 사회안전성 구성원에게 돈을 주고 형량을 낮추거나 구금 시설에서 빨리 풀려날 수도 있다. 한 여성 이탈자는 뇌물을 낸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형을 받았다고도 말했다. 조사 담당자에게 뇌물을 주는 방법으로 자백을 강요하려는 목적으로 자행되는 신체 및 언어 폭력 등의 가혹한 처우를 모면하고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이 받아들여지게 한 사례도 있다. 구금 시설 내에서는 가족이 가져 온 음식을 받기 위해, 또는 덜 힘든 일에 배정받고자 뇌물을 쓴다. 군 복무를 하지 않거나 특정 일자리를 얻기 위해, 또는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자 뇌물을 주기도 한다. 더하여 자유롭게 국내에서 이동을 하거나 외국 매체물을 접하거나 국외로 전화를 걸거나 의복 규제를 피하는 등 개인이 자유를 누리는 것도 뇌물을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는 것으로 파악된다.²⁷

25. 정치범 수용소인 관리소에 갈 수도 있다는 우려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와 관련된 일상 면면에 퍼져있다. 최고지도자(수령)나 정부를 비난하거나 대한민국에 가려고 시도하거나 종교 활동을 하는 등 “불충한” 행위를 한 경우 관리소에 보내질 수 있다는 사고가 만연하다. 본 보고서가 다루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가려고 시도하거나 이러한 시도를 돕거나 종교 활동을 하거나 또는 국가에 비판적인 “정치적” 발언을 하는 등 “불충한” 행위로 관리소에 보내진 가족이나 지인에 대해 언급한 북 이탈자가 여전히 있었다.²⁸

26. 조선로동당 일당 체제 하에서 정치 참여 권리 행사가 여전히 불가하다. 선거 때 국민은 조선로동당이 내세운 후보 한 명에게만 표를 주게 되어 있다. 유의미한 민주적 참여 부재가 초래한 문제 중 하나로 현저히 낮은 정부 내 여성 인사 비율을

²² 상동.

²³ 109 상무는 여러 부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검열 조직으로 외국 매체, 출판물, 라디오, DVD를 검열하고자 2014년 발족했다.

²⁴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수행한 면담 자료.

²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참조, 2015, 제 222 조.

²⁶ NK 뉴스, “김정은, 조선로동당 전체 회의 첫날 식량 문제 인정(Kim Jong Un admits food security issues as party plenum event kicks off)”, 2021년 6월 16일.

²⁷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수행한 면담 자료.

²⁸ 상동.

들 수 있다. 국제의회연맹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회 내 여성 인사 비율에 따른 국가 순위로 전세계 126위에 올랐다. 최고인민회의 구성원의 (687명 가운데 121명에 해당하는) 17.6퍼센트만이 여성이다.²⁹ 그나마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에 더하여, 외무성 제1부상,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통일전선부 통일책략실장 등 고위급 여성 인사 수가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다.³⁰ 다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및 내각을 포함한 최고위 의사 결정 기구의 여성 참여가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은 여전하다.³¹

C.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2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2020년 1월 말부터 국경과 학교를 닫고 정보 전달 캠페인을 시작하고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발견, 대응을 위해 보건 부문 종사자를 동원하는 조치를 취하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세계보건기구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본 보고서가 다루는 기간 동안 해당국 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건은 전무하다.

2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도자는 2021년 초 제8차 조선로동당 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인민생활향상에서 뚜렷한 진전을 달성하는 데 “심히 미진”했다고 인정했다.³²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월 8일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 폐회사에서 “모진 고난을 겪어 온 인민들의 고생을 이제는 하나라도 덜어주”기 위하여 “당중앙위원회로부터 시작하여 각급 당조직들, 전당의 세포비서들이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요구했다.³³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2021년 7월 13일 202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고위급 정치포럼에서 첫 자발적국가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를 제출했다.

2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규제 조치는 2020년 1월 말부터 이행됐는데, 그 결과 직장 다수가 문을 닫고 시장에 유통되는 식량의 양과 질이 모두 악화됐다고 알려졌다.

3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규제 조치가 취해지기 전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만성 식량 부족을 겪으며, 식량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세계식량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이 2019년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약 1010만명이 식량 불안정을 겪으며 식량 지원이 당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³⁴ 세계식량기구는 2021년 3월 분기별 보고서에서 전체 인구의 상당수가 식량 소비량이 적고 식단 다양성이 심각하게 떨어진다고 언급했다. 이는 특히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초래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이 식량 불안정성 면에서 한층 더 취약해졌다는 것을 시사한다. 가령 국경 차단은 식량 수입과 종자, 비료, 농업용 화학품 및 비닐 등의 핵심 농업 자재 수입 지연으로 이어졌다. 한편 해당국 정부의

²⁹ 국제의회연맹 (IPU), IPU Parlin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최고인민회의, 2021.

³⁰ 38 노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성 지도자 부상”, 2020년 9월 25일.

³¹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20, 395-397쪽.

³² KCNA Watch,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을 새 승리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2021년 1월 9일.

³³ KCNA Watch,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에서 결론”, 2021년 4월 9일.

³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및 세계식량계획(WFP), “FAO/WFP 공동 신속 식량 안보 평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19년 5월, 4쪽 및 44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조치로 인해 2020 년과 2021 년 식량 생산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거나 상황을 살필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식량기구는 분기별 보고서에서 해당국 내 식단 다양성과 식량 안정성이 더욱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냈다.³⁵

3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규제 조치를 취하기 전에도 북 이탈자들은 해당국 내에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이 특히 어려웠다고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진술했다. 한 이탈자는 “채소를 뽑고 약초를 캐서 하루에 겨우 한끼”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탈자는 “밀수 등을 해서 열심히 일해도 생활은 좋지 않았”고 “너물을 주느라 돈을 많이 썼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이탈자는 무상으로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동원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고 “장사를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기에 충분한 돈을 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식량과 같은 기초적인 생필품 접근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 이탈자는 “명품이나 비싼 옷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강냉이랑 된장국은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탈자는 “북에 사는 사람들은 입쌀을 먹는게 꿈”이라고도 언급했다.³⁶

3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2020 년 10 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 이후 기아의 위험 등을 포함하여 해당국 내 식량 상황이 악화된 데 우려를 표했다. 특별보고관은 해당국 내 정부로 하여금 식량 불안정성을 해결하도록 필요한 자원을 투입하고 고립의 사슬을 끊어내도록 촉구했다(A/75/388, 문단 16).

3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국 간 2020 년 교역량은 전년 대비 80 퍼센트 감소했다고 알려진다.³⁷ 러시아 연방 세관 자료에 따르면 2020 년 북러 간 총 교역량도 전년 대비 42 퍼센트 가까이 감소했다.³⁸ 안보리 결의 1874 (2009) 에 따라 설립된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에 따르면 2020 년 1 월부터 9 월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총 수출량은 전년도 총 수출량의 9.2 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S/2021/211, 문단 84).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20 년 “여러 차례” 제재 대상 물품에 해당하는 기계, 전기 설비, 철 등을 거래했을 뿐만 아니라 석탄 등을 수출했는데, 이는 관련 결의 다수를 위반한 사례이다(상동 문단 85–86). 전문가 패널은 또한 직접 인도와 해상 환적을 통해 불법으로 정제유를 수입한 사례도 보고했다.

34. 국경을 넘거나 국내에서 이동을 하는데 제한이 있어 국제 인도주의 담당자나 외교 관계자는 2020 년 8 월 이후 입국할 수 없었다. 주요 인도적 지원 물자는 국내로 반입되지 못하고, 현장 방문도 허용되지 않았다. 2021 년 3 월 중순 기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 유엔 소속 국제 직원은 상주하지 않고 있다. 특히 국경과 지방을 중심으로 취약 계층의 상황이 더욱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는 시기에 이들의 생명선을 끊어버린 것이나 다름없다.³⁹ 2021 년 기준 해당국 내 1060 만명 가량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5 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 및 수유부가 우려된다.

³⁵ 세계식량농업기구,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글로벌 분기 보고*, 2021 년 3 월, 5 쪽 및 26 쪽.

³⁶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수행한 면담 자료.

³⁷ 로이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봉쇄 여파로 북중 교역량 80 퍼센트 감소(N.Korea's trade with China plunges 80% as COVID-19 lockdown bites)”, 2021 년 1 월 19 일.

³⁸ NK 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로 2020 년 북러 교역량 42 퍼센트 가까이 급락(North Korea-Russia trade plummeted by nearly 42% in 2020 — the year of COVID-19)”, 2021 년 3 월 5 일.

³⁹ 2020 년 1040 만명이 인도적 지원이 필요했던 것에 비해 약간 증가했는데, 원격으로 평가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이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자연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만성적인 빈곤 상황이 더욱 악화됐을 수 있다.

35. 보건 인프라와 보건 부문 종사자 및 의사 역량은 여전히 취약하다. 보건 체계상 핵심 의료 물품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하고 주요 장비 및 숙달된 종사자가 부재하다. 2019년 10월 발표된 세계보건안보지수(*Global Health Security Index: Building Collective Action and Accountability*)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환자를 치료하고 보건 부문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히 견고한 보건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봤을 때 195개국 가운데 193위를 차지하여 전염병이나 대유행에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이다.⁴⁰

36. 본 보고서가 다루는 기간 동안 면담한 한 여성 이탈자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 이전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병원엔 약이 없고 의료 기관이 수준 이하였다.” 보건 의료 접근성 또한 어느 정도는 지불할 돈이 있는지에 달렸는데, 간호사로 일했던 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복은...무상 의료를 제공한다. 하지만 의사에게 돈을 줘야 검사를 해주는 것이 현실이다. 돈을 받은 다음에야 수술도 한다...대체적으로 의사, 간호사, 보조는 환자가 준 돈에 기대어 생활한다.” 자신도 “간호사로 일할 때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⁴¹ 보건 의료 접근성에 있어 도서 간 격차가 여전히 상당하며, 2020년 1월 말 이후 국경이 차단됐기 때문에 상황이 더욱 악화됐을 것이다.

37.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아동기금은 보건성과 협력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배포 계획과 이에 대한 준비 정도를 파악(COVID-19 Introduction Readiness Assessment Tool)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현장의 유엔 운영 역량이 제한적이고 수송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협력이 효과적이기 쉽지 않다. 세계백신면역연합(Global Alliance for Vaccine and Immunization)과 세계보건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코백스(COVAX)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하기로 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70만회분 제공이 기존 6월에서 2021년 7월에서 12월사이로 미뤄졌다고 2021년 5월 보고됐다. 해당국 내 “기술적 준비”가 미진과 “전세계 공급 부족”이 공급 지연의 원인으로 언급됐다.⁴² 한 명당 2회분의 백신을 맞아야 하기 때문에, 170만회분은 전체 인구의 3.3퍼센트에 해당되는 경우 85만 명에게 제공될 수 있는 분량이다.⁴³

D. 가족 이산, 강제 또는 비자발적 실종, 국제 납치

38. 본 보고서가 다루는 기간 동안 국가 차원의 가족 이산 피해자 상봉 행사는 열리지 않았다. 2018년 9월 19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사항이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

39. 인권이사회 강제 및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2021년 5월 7일 기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남성 281명과 여성 49명 실종 건을 포함한 330건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가운데 소명된 건은 없다. (2020년 9월 열린) 122차 회기 때는 12건이 전달됐고, (2021년 2월 열린) 123차 회기에는 2건이 전달됐다. 제 121차 및 122차 회기에서 실무그룹은 해당국 정부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동일한 답변을 반복하는 것에 대한 실망감을 재차 언급했다.⁴⁴

⁴⁰ www.ghsindex.org/wp-content/uploads/2019/10/2019-Global-Health-Security-Index.pdf 참조, 28쪽 및 245쪽.

⁴¹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수행한 면담 자료.

⁴² NK 뉴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수백만 회분 공급 지연(North Korea stuck waiting for millions of COVID-19 vaccines)”, 2021년 5월 6일.

⁴³ NK 뉴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2021년 5월까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170만회분 공급 예정(North Korea to get 1.7 million doses of COVID-19 vaccine through May 2021)”, 2021년 3월 3일.

⁴⁴ A/HRC/WGEID/121/1 참조, 문단 60. A/HRC/WGEID/122/1 참조, 문단 65.

아울러 실무그룹은 실종된 이들의 생사 또는 소재를 파악하도록 수색 및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취했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실무그룹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970 년대와 1980 년대에 납치된 여성 6 명과 남성 6 명을 포함한 일본인 국적자 12 명의 생사도 여전히 소명되지 않았다.

40. 일본 정부는 2021 년 6 월 15 일 납치 문제를 국제 사안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자 6 월 29 일 유엔에서 온라인 심포지엄을 개최하겠다고 발표했다.⁴⁵ 이에 대응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납치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고 언급하는 보도 자료를 냈다. 아울러 심포지엄의 숨은 의도는 “지난 세기 40 여년 동안 우리 나라를 불법,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840 만 여명의 조선인 강제 납치, 100 여만 명의 조선인 학살, 20 만 명의 여성들에 대한 일본군 성노예살이 강요” 등의 범죄를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⁴⁶

IV.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 관련 정부와 유엔 간 협력

A. 유엔 정부간 기구 및 조약 기구와의 협력

4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과의 협력을 포함하여 인권이사회 결의 25/25 에 따른 협력을 계속하여 거부했다. 특별보고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건설적인 협력을 일관되게 추진해왔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와 같은 새로이 등장한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단합과 협력의 정신을 발휘할 것을 촉구해왔다(A/75/388, 문단 49).

42. 본 보고서가 다루는 기간 동안 주제별 특별절차 위임권한 수행자들은 임무를 위한 국가 방문을 수행할 수 없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앞으로의 방문 요청도 수용하지 않았다. 두 명의 위임권한 수행자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초청할 것을 요청했는데, 안전한 식수와 위생에 관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2021 년 2 월 24 일 재차 방문을 요청했고, 현대판 노예 제도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2021 년 3 월 4 일 방문을 요청했다. 하지만 두 건 모두 답변을 받지 못했다.

43. 유엔 총회는 결의 75/190 에서 안보리로 하여금 인권을 비롯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상황에 관한 논의를 즉시 재개하도록 촉구했다. 안보리는 “기타 안건(any other business)”으로 2020 년 12 월 11 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을 논의했다. 독일은 다른 안보리 이사국 7 개국을 대신하여 성명을 발표했는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인권 침해를 중단하고, 인권 기록과 관련하여 국제공동체와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협력하고, 유엔 인권 메커니즘이 해당국에 자유롭게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44. 인권이사회는 결의 46/17 를 통해 많은 경우 반인도범죄에 이를 수 있는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심각한 인권 침해와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인권이사회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피해자,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만나 일련의 협의를 진행하여 책임 규명 방안에 대한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요구했다.

⁴⁵ www.un.emb-japan.go.jp/itpr_en/events_051921.html 참조.

⁴⁶ KCNA Watch, “세상을 기만하는 일본의 허황한 납치소동”, 2021 년 6 월 15 일.

45.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는 (2021년 3월 1일부터 26일까지 열린) 제 131차 회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 3차 정기 보고서 제출에 앞서 쟁점 사안을 채택했다(CCPR/C/PRK/QPR/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쟁점 사안에 대한 답변을 2022년 4월 22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해당 답변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40조에 의거하여 제 3차 정기 보고서의 일부로 반영된다.

4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제 3차 정기 보고서를 2008년 6월 30일로 정해진 기한을 넘겨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따라 제출해야 할 첫번째 보고서는 2016년 12월 10일로 정해진 기한을 넘겨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4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후속 조치 절차 관련 보고서를 2019년 11월로 정해진 기한을 넘겨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7년 최종견해(CEDAW/C/PRK/CO/2-4)가 채택된 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후속 조치 보고서를 최종 견해 채택 시점 기준 2년 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후속 조치 보고서는 문단 12(a) (여성에 대한 차별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를 법에 명시), 문단 12(b) (최저 혼인 연령), 문단 38 (직장 내 성추행 및 성별을 근거로 한 차별), 문단 46(a) (구급 시설 내 여성을 여성 경비가 담당하고 시설 내 경비 담당자 모두에게 젠더 민감화 의무 교육 제공)에 적시된 권고 이행에 따른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2020년 3월 11일 이를 상기하는 서한을 처음으로 송부했다.

B.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의 협력

48. 인권이사회 결의 25/25에 따라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이하 “서울유엔인권사무소”)는 모니터링, 기록, 역량 강화 및 관계 구축(outreach) 활동을 이어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떠난 개인, 역내 및 기타 국가 정부, 시민사회활동가, 유엔 기구 및 인도주의 단체와 협력했다.

49. 서울유엔인권사무소는 제네바 유엔 사무국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설 대표부에 본 보고서 발표 전 공유하여 논평을 요청했으나, 별다른 답변이 오지 않았다. 본 보고서가 다루는 기간 동안 지속적인 협력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 실질적인 협력은 이뤄지지 않았다. 가령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유엔 정무평화구축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온라인 교류를 통해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후속 조치 등을 살피도록 제안했으나 아직까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C.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활동 중인 유엔 기구와의 협력

5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접근 및 이동 제한 조치로 인해,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국제 직원은 상주하지 않고 있다. 안보리 결의 1718(2006)에 따라 발족된 안보리 위원회는 인도적 지원 목적에 해당되는 사례라면, 제재 면제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2020년 인도적 협력 관계자는 490 만명을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었다. 더하여 해당 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또한 인도적 지원 목적의 제재 면제 절차 일부를 간소화하고 제재 면제 평균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했으며 대유행 발발이나 자연재해 등과

같은 비상 상황에 따른 긴급 요청에 적용할 수 있는 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했다.

V. 결론

51. 본 보고서가 다루는 기간 동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이 이어지면서 인권 상황에 대한 신빙성 있는 데이터나 기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웠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이탈한 남녀의 진술을 계속해서 기록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탈은 당사자뿐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남아있는 가족에게도 상당한 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 이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떠난 후 상당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면담이 가능한 장소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해당국 내 최근 인권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무척 어렵다. 하지만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인권 침해 양상이 여전히 반복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하여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는데, 이는 해당국의 고위 지도층도 인정하는 바 있다.

5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파를 막고자 이행한 조치는 환영하는 바이나, 여전히 국경을 차단하고 국내 이동을 상당히 제한하는 이러한 조치는 특히 식량권을 중심으로 인권 상황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규제 조치는 기존 인권 우려를 더욱 심화시켰는데, 제도적, 법적, 정책적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감시가 강화되고 정보 접근의 자유가 더욱 제한되는 추세를 돌리고, 이견을 포용하고, 강제 노동 의존도를 낮추며, 국내외 이동의 자유권을 보호하고,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리도록 하는 이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

53. 비록 인도적 지원이 여전히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근본적인 취약성과 국민의 인권이 부정되는 상황의 원인을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발전권과 관련하여 국가가 지니는 의무로, 포용력 있고 동등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대대적인 장기 개혁을 시작할 의무 등이 있다. 전반적인 한반도 상황 또한 각 유엔 기구별 집행이사회의 개발 활동을 승인할 의지와 공여국의 자금 지원 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공동체 내에서 계속해서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외교 공관 및 유엔이 평양에 굳건히 자리하는 것은 정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의사소통과 협력에 필수적이다. 더하여 외교 공관 및 유엔이 주재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인권 향유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신뢰 구축 및 협력 관계 발전 과정이 중단되고 점차적으로 약화된다.

VI. 권고 ⁴⁷

55. 사무총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다음을 권고한다.

일반

(a)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를 다루고 침해를 종식하도록 즉각 조치를 취한다.

(b) 모두를 위해 모든 인권을 존중하는 평화롭고 안전한 한반도를 보장하도록 외교 협력을 재개한다.

⁴⁷ 앞서 제출한 사무총장 보고서에서 제시한 권고도 여전히 유효하다.

(c) 유엔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단체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에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에, 적절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조치 하에 국제 직원의 입국과 접근을 허용하여 백신 및 기타 원조 제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d)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과의 건설적인 협력을 시작한다.

구금

(e) 구금 시설 내 환경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구금 시설 내 수감자를 인도적으로 대우하는 데 있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의 유관 조항에 명시된 의무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한다. 아울러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넬슨 만델라 규칙)과 유엔 여성 수용자 처우와 여성 범죄자 사회 내 처우에 관한 규칙(방콕 규칙)에 명시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시켜야 한다.

(f) 구금 시설 내 남녀 수감자를 대상으로 심문과 징계 수단으로 관행적으로 동원되는 구타를 포함한 고문과 기타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한다.

(g) 구금 시설 내 수감자에게 제공하는 식량의 양과 질을 반드시 개선한다.

(h) 극도로 가혹한 환경 속에서 이뤄지는 교정 제도 하의 강제 노동 문제를 해결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i) 민주적 참여를 도모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이행하는 시발점으로 국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의 여성 구성원 수를 늘리도록 조치한다.

(j)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행사를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정보 접근과 표현의 자유 제한을 더욱 강화하는 추세를 돌린다.

(k) 정치범 수감자를 전원 석방하고 정치범 수용소를 모두 해체 한다. 정치적 의견을 내거나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또는 사회적 배경을 근거로 자의적으로 체포 및 구금하는 조치를 즉각 중단한다.

(l)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법 제도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치주의를 세우도록 조치를 취한다.

(m)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 제 131 회기에서 채택된 쟁점 사안에 대한 답변을 2022년 4월 22일까지 제공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n) 국제 지원과 협력을 통하는 등 최대한의 가용 자원을 동원하고 활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식량 불안정을 해결하고 생활 수준을 높이도록 즉각 조치를 취한다.

(o)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조치로 인한 젠더 차원의 영향을 포함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공공 정책과 자원 배분을 통해 해당 조치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도록 한다.

(p) 사회에서 가장 빈곤하고 소외된 이들의 식량 불안정을 해결하도록 식이 섭취 필요를 충족시키는 노력을 포함하여 즉각 조치를 취한다.

(q) 보건 인프라를 개선하고 보건 종사자 및 의료 전문가 역량을 확대하며, 핵심 의료 물자와 장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r) 국제 협력 및 지원을 통하는 등 차별없이 국민 모두에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접근성을 제공하도록 필요한 조치 모두를 취한다.

(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평양과 특히 농촌과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평양 외 지역 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향유 정도의 격차가 더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t) 외교 관계자와 인도적 활동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며, 인도적 활동가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 모두에게 접근할 수 있게 보장한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도입과 관련하여 필요한 인도적 지원 분배 체계를 가능한 빨리 다시 운영한다.

(u)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에 제 3 차 정기 보고서를 제출한다.

가족 이산, 강제 및 비자발적 실종 및 국제 납치

(v) 대한민국과 협력하여 가족 이산 피해자가 화상 통화 장비 활용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협력 조치는 한반도 출신으로 가족 이산의 영향을 받은 해외 거주민 모두에게 확대되어야 한다.

(w) 모든 실종 피해자의 생사 또는 소재를 소명하고, 일본, 대한민국 및 기타 국가에서 납치된 피해자의 가족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피해자의 과거 생애와 생사를 소명하고, 납치 피해자 모두를 즉각 송환한다.

56. 사무총장은 국제공동체에 다음을 권고한다.

(a) 인권 대화, 공식 국가 방문, 협력 조치 및 인적 교류 확대 등을 포함하여 인권 상황을 개선하도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체계적으로 협력한다.

(b)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탈자로 해외에 거주하는 이들과의 교류를 확대하여 인권 문제에 대한 외교적 관여와 관련하여 이들의 의견과 바람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c) 인신 매매 대응 노력에 발맞춰 변칙적으로 국경을 건너는 (대부분이 여성으로 인신매매 피해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을 대상으로 보호 조치를 확대하고, 이들이 보호받고 송환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한다.

(d) 국제법 상 가능한 관할권 원칙을 적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심각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한다.

(e) 특히 식량과 의약품을 중심으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도적 환경과 인권 상황을 개선하려는 목적이다.

(f)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활동을 이어가려는 인도주의 단체가 겪는 현금 흐름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속력이 있는 해결책을 조율하여 제공한다.

(g)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적용된 제재 조치가 인도적 상황에 미치는 의도치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개발 관계자가 역량 개발 조치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다. 역량 개발은 식량 위기 및 자연 재해와 관련해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고 인도적 필요를 줄여나갈 수 있고, 또한 국내적으로 의약품과 보건 의료를 자체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다.